

강릉시 공고 제 2017-582 호

송 시 송 달 공 고

장애인연금법 제17조(장애인연급의 환수)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04월 19일

강 령 시 장

1. 공고명칭 : 장애인연금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위반내용 : 장애인연금법 제17조(장애인연급의 환수)
3. 공고기간 : 2017. 04. 20. ~ 2017. 05. 19.
4. 공고대상 : 아래 <붙임1> 참조
5.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
 - 장애인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(압류)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17. 5. 31.까지 강릉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복지정책과(☎033-640-5745)로 문의바랍니다.

<붙임1>

공 고 대 상

대상자	주 소	환수사유	발송일	반송일	반송사유	비고
박*임	강원도 강릉시 연당길 **	직역연금수급자로 장애인연금 지급분 환수	2017.04.10	2017.04.17	폐문부재	사전통 고지서